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02-01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2019. 6.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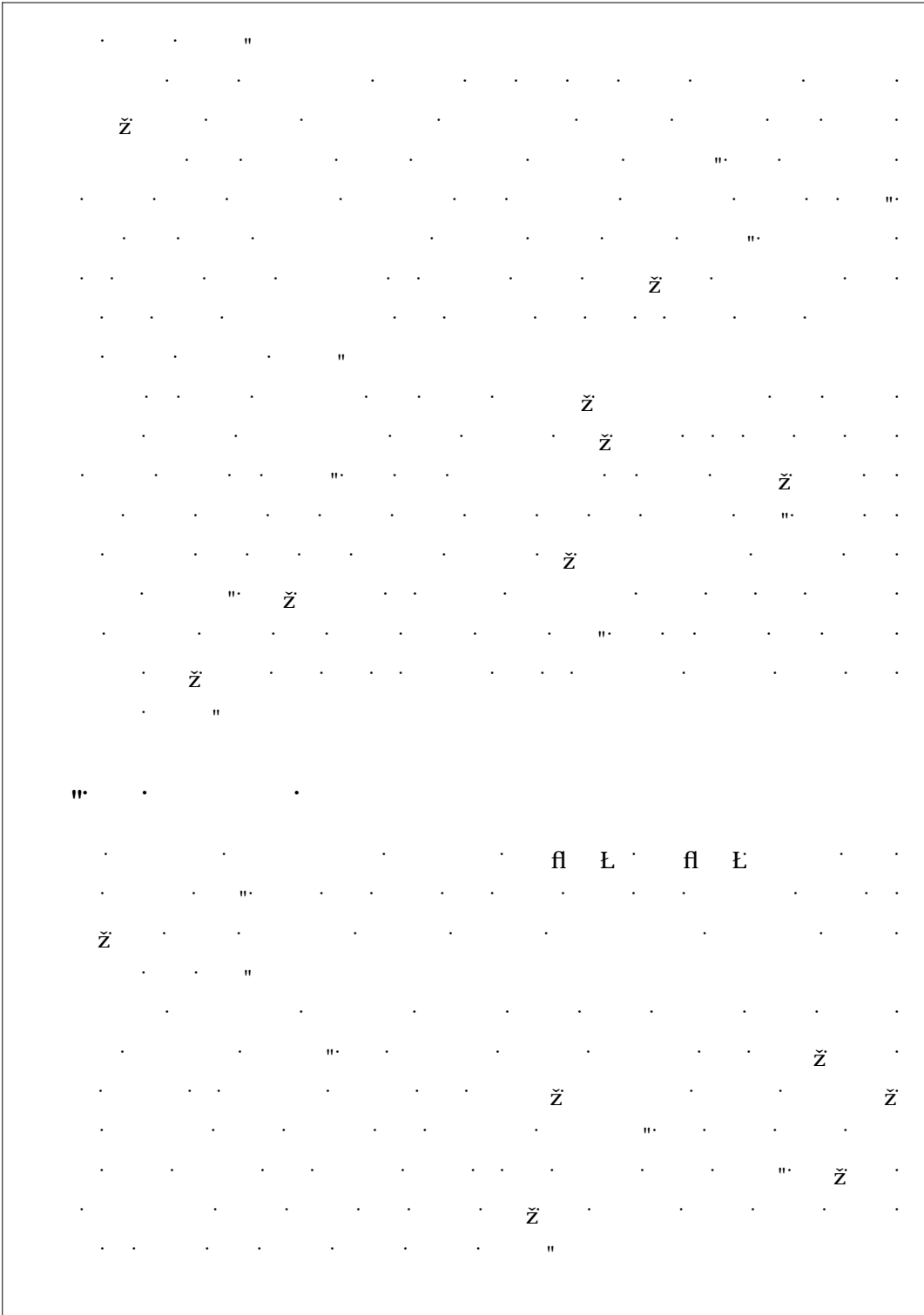
권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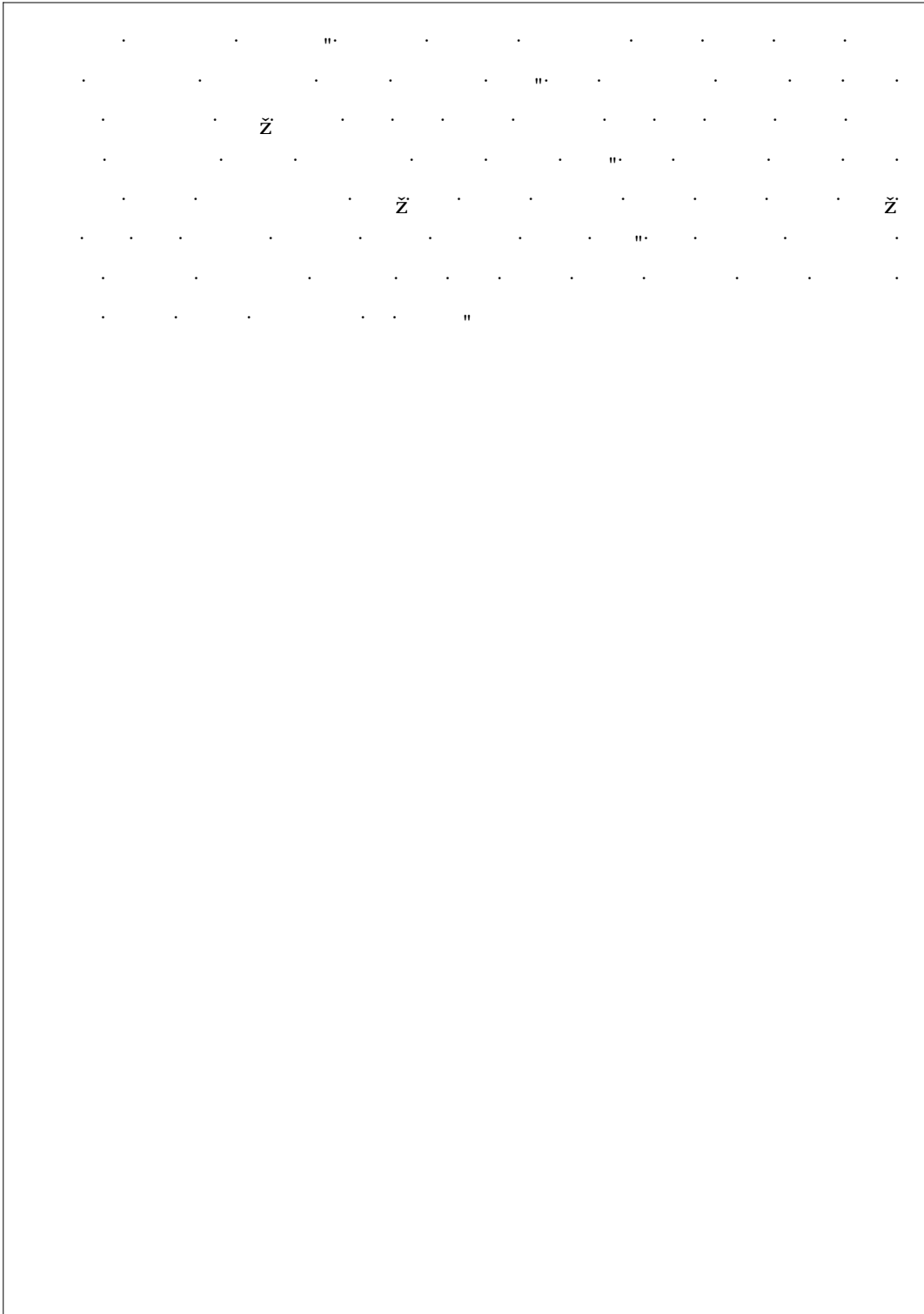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표 1〉 육아휴직제도의 쟁점

쟁점사항	내용
육아휴직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대상 (커버리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지원정책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제도로,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정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육아휴직제도로 어느 범위까지 커버해야 하는가? 커버리지 확대와 재원확보의 문제
급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짧게라도 사용하게 하는 정책설계가 적절한가? - 소득대체율, 상한액, 하한액 상향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상향 수준과 기준은? -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수혜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실효성과 차별적 요소에 대한 평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안
사후지급금제도 검토 및 복귀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지급금제도가 복귀를 촉진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육아휴직 후 복귀를 촉진하는 다른 방안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급여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급여는 한쪽에만 지급되고 있음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경우 모두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에 향후계획으로 포함되었음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은데, 여전히 사용은 저조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단축시간, 분할횟수 등 사용의 자율성 확보 방안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목 차

I " 서론		%
%"		'
&"		(
"·		(
"·)
II "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III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 ,)

% , +	, +
" , +	, +
" , -	, -
& fl L -)	-)
" -)	-)
" - ,	- ,
" %\$+	%\$+
" %\$+	%\$+
" %\$-	%\$-
" %&	%&

V" 결론 및 향후과제 , ,) %&

% %&	%&
& %&	%&

X참고문헌 , ,) %&

표 목 차

0	!	%		%&
0	!	&		%*
0	!	'		%
0	!	(%
0	!)		%
0	!	*		&'
0	!	+		' (
0	!	%		(%
0	!	&		(&
0	!	'	86 &S%+	(+
0	!	(%) S
0	!)	ž),
0	!	*	ž fRS% L)-
0	!	+	F/ 8	* S
0	!	,		* &
0	!	-		**
0	!	%	ž ž	+&
0	!	%		+(
0	!	%		+(
0	!	%		++
0	!	%		+
0	!	&		-
0	!	'		,, - S
0	!	(- S
0	!)		,, - %
0	!	*		- (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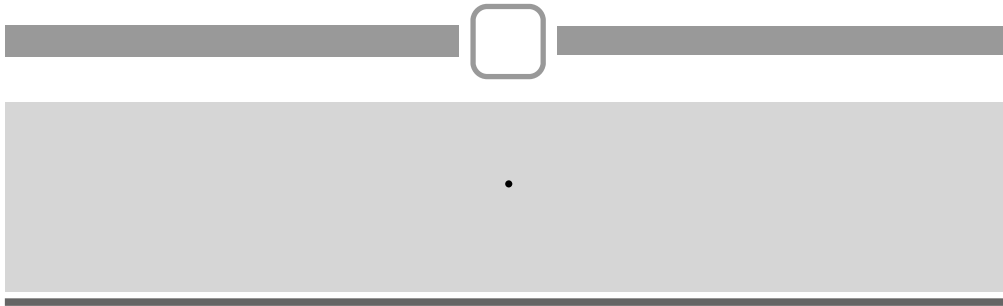
```

0 · !, 2 · ..... - ,
0 · !- 2 · ..... - -
0 · !%$2 ..... %$$
0 · !%%2 ..... %$'
0 · !%&2 ..... %$(
0 · !% 2 ..... %$(
0 · !%( 2 ..... %)
0 · !% ) 2 ..... %$*
0 · !%* 2 ..... %$*
0 · !%+ 2 ..... %$$
0 · !% 2 ..... %%%
0 · !% 2 ..... %%%
0 · !&$2 ..... %$
0 · !&% 2 ..... f&$% L, ..... %$
0 · !% 2 ..... f&$%L, ..... %$+

```

그림 목 차

○ · !%Q	&&
○ · !%Q	(,
○ · !&Q	* (
○ · !' Q	* - ž
○ · !%Q	%S,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

(

#Z

ž
 " ž
 " &S% ' &S%+ ž
 ' SS ' () " 1 ž %SS &- ' %S"* 1 ž ' S -- ' %S"* 1 ž %S & ' %&") 1 ž
) - ' &S"- 1 ' SS fl
 ' 86 ž ' &S%+E' ' &S%
 -- ž% - ' %+ž* * & ' %+" , 1 " "
 ž
 ' &SS- ' %'(1 ' %S ž ' ' SS
 ') , ") 1
 fl ž &S% " %' & (' E'
 ž
 ž
 " "
 ' %SS ž ' %& " ,
 ž ' S" , %
 fl ž &S% E' ' *) " S1 ž
 ' (' %
 fl ž &S%+ E'
 ž
 ž
 " "
 ž
 ž

%L C978 : Ua]m8UHMpR&S% E' C978 ' WW Učbg VgYX cb]bZfa Učb Zca ' bUčbU'
 a]b]f]Yg UbX gUhg]W ' cZ]Wg ' Acgg D&S% E' %h ' bhfbUčbU ' fY]Yk ' cZ ' YJ Y'
 dc]Wg UbX fY UHX fYgUFW ' &S%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ž . ž " .
 ž .
 " .
 ž ž .
 " .
 &&% ' %& ' + ž .
 " .
 ž .
 ž ž .
 ž .
 ž . ž .

\$ž

가. 연구내용

선행연구 검토

- ! ž .
- ! ž .
- ! ž .
- ! ž .
- ! ž . ž . ž .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 · fl L · · · · ·

! · · · · ·

! · · · · ·

! · · · fl L

fl L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제시

· # · · · · ·

· · · · ·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 · · ·

· · · · ·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 · · · fl L · · · · ·

! · · · · · " S · · · · ·

fl L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 86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및 자문회의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발전과정
&*육아휴직제도 연구동향

-
&\$

#2

.
 ž
 fl ž &S% E' % , ,
 %
 ž ž
 "
 ž "
 &S%
 "
 (. % -) + ž % - ,
 fl ž &SS+.%L
 "
 fl ž &S% E'
 ž
 &SS%
)
 fl ž &S%+Lž
 fl ž &S% E'
 & &L ž
 "

가.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제도의 변화

.
 " ž

&L &SS,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1.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2.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3. 육아휴직제도의 개편 방안
 4. 육아휴직제도의 효과
 5.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표 -1〉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시기	주요내용	세부내용	법령
1988.4	- 육아휴직제도 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행	- 적용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1년 이내, 무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1989.4	-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1995.7	- 고용보험제도 시행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 신설 외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 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 등의 지원제도 신설)	- 적용대상: 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70인 이상 - 적용제외 : 건설공사 금액 40억원 미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
1995.8	- 남성 육아휴직 가능(여성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	-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 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가능 -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1998.10	- 고용보험 전 사업장 적용 확대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임시 시간제 근로자도 적용	

시기	주요내용	세부내용	법령
2001.11	- 고용보험법 개정 -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규정 및 급여 신설	-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 - 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135만원)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의3
2002.12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20만원→월3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의3
2004.2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30만원→월4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의3
2006.1	- 산전후휴가 3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가능연령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전후휴가 90일분 급여 전부 -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 생후 1년 미만→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일 가정 양립 중요성 강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07.4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40만원→월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의3
2008.6	-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 수정	- 사업주가 대위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 - 생후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규정 삭제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상당부분 차지(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분할사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0.2	-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 생후 3년 미만→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1.1	- 육아휴직 정률제 전환 및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변경(사후지급금 도입)	- 월50만원→월 통상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 (제2차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2011.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012.8	-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 유산사산휴가 범위 확대(16주전에도 가능)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일→5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규정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㉞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시기	주요내용	세부내용	법령
2014.1	-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 만6세이하 미취학자녀→만8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4.7	- 다탈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 및 급여 확대		
2014.9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 - 급여 삭감 없음	
2014.10	- '아빠의달' 육아휴직 특례제도 신설	-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 최초 1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후지급금 제도 미적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 조정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선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임신, 출산→임출산, 육아휴직	
2015.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무기계약 체결시 지원금 6개월간 월30만원→ 월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80만원	
2015.7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 확대	- 15%→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 (지원대상조정)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 휴직 부여 지원금 폐지 - (지원방식 변경) 육아휴직 후 1개월에 대한 금액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조정	- 대규모 기업 10만원→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 미만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30만원 - 대규모기업 10만원→20만원	
2016.1	-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 육아휴직 인센티브) 기간 확대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하는 '아빠의달'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첫 1개월에서 첫3개월로 확대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6.3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자동육아 휴직제 확산을 위한 통합서식 개발 보급	
2017.1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 상한액 135만원→150만원으로 인상	
2017.7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인상 (둘째이상 자녀 해당)	- 첫째자녀는 그대로 상한 150만원 유지 - 2017.7.1. 이후 출생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시기	주요내용	세부내용	법령
2017.9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 상/하한액 150만원/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40%(상/하한액 100만원/5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
2018.1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60%→80% 상향조정(상/하한 100만원/50만원) ※ 육아휴직과 분할사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2018.5	-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았음)→휴직전 출근기간+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 출근비율에 따라 15-25일 한도로 부여	근로기준법60조 6항3호
2019.1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인상	- 상한액 200만원→25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하한 150만원/70만원) 적용 동일 - 이후 9월간 통상임금의 50%(상/하한 120만원/7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

나. 육아휴직 급여지급 과정상 쟁점3)

1) 육아휴직 급여지급 재원의 문제

쟁점 1) 육아휴직 급여지급 재원 확보 문제
 육아휴직 급여지급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는 보험료 수입과 정부보조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쟁점 2) 육아휴직 급여지급 절차 문제
 육아휴직 급여지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급여지급 신청을 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쟁점 3) 육아휴직 급여지급 대상자 문제
 육아휴직 급여지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년 이내에 출근한 근로자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년 이내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fl ž &S% ž &S% E'

<표 -3> 고용보험 내 일반회계 관련 법령 변화

시기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부담) 주요내용
1995. 1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2001.11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2006. 1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산설).
2007. 5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015. 1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문제

ž &S%
&S
fl ž &S% E'
%S &S% ž
ž "

<표 -4> 육아휴직급여의 적정성 논의 과정

- X
- 제11차 국회 정기회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소득의 30%범위 내에서 하자는 의견과 고용 보험에서 휴직급여를 신설하여 소득의 70%까지 지원이 제안되었음
 - 그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 경총은 소득의 30% 지급은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와 악용사례 발생 등으로 반대하는 반면, 노총은 통상임금의 100%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30%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의견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음
 - 육아휴직 정액급여를 10만원씩 인상하는 방식은 소득대체 효과가 매우 미약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어 임금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함

- 재계와 대한상의는 정률제 방식 전환을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의 기업부담 증가와 대기업 정규직을 위한 추가혜택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음

3) 육아휴직 급여지원의 대상확대 문제

2005년 육아휴직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 3세 미만이나 이는 일반근로자가 1년 미만인 것에 비해 육아휴직 권리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대상확대는 오히려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현상과 정부 예산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었음

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상확대만 중점을 두지 말고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의견 제시

2009년 대상확대에 대한 법개정안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대상확대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의 책임인데, 1999년 현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단 2명에 불과. 이는 정부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2014년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임.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임금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여성이 먼저 쓰고 남성이 나중에 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

〈표 -5〉 육아휴직 대상확대 논의 과정

- 2005년 육아휴직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의 경우 3세 미만이나 이는 일반근로자가 1년 미만인 것에 비해 육아휴직 권리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대상확대는 오히려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현상과 정부 예산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었음
- 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상확대만 중점을 두지 말고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의견 제시
- 2009년 대상확대에 대한 법개정안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대상확대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의 책임인데, 1999년 현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단 2명에 불과. 이는 정부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
- 2014년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임.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임금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여성이 먼저 쓰고 남성이 나중에 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

선행연구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ž

% - ' fl ž &S) L'

ž

" ž

fl ž &S%&L'

"

ž

fl

ž &S% L'

ž

ž

ž

"

ž

ž

ž

"

가. 육아휴직의 목적과 효과성

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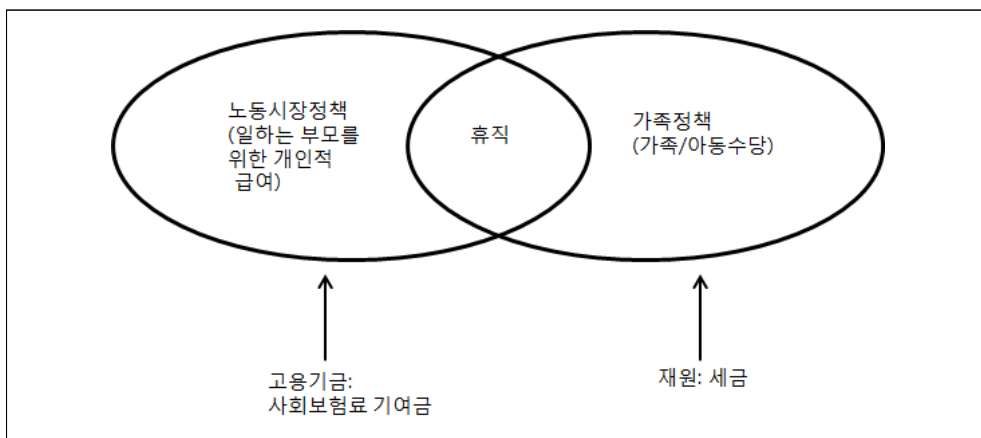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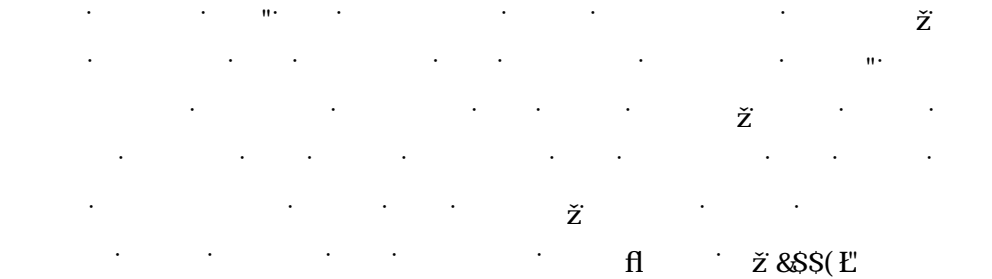
ž

ž

ž

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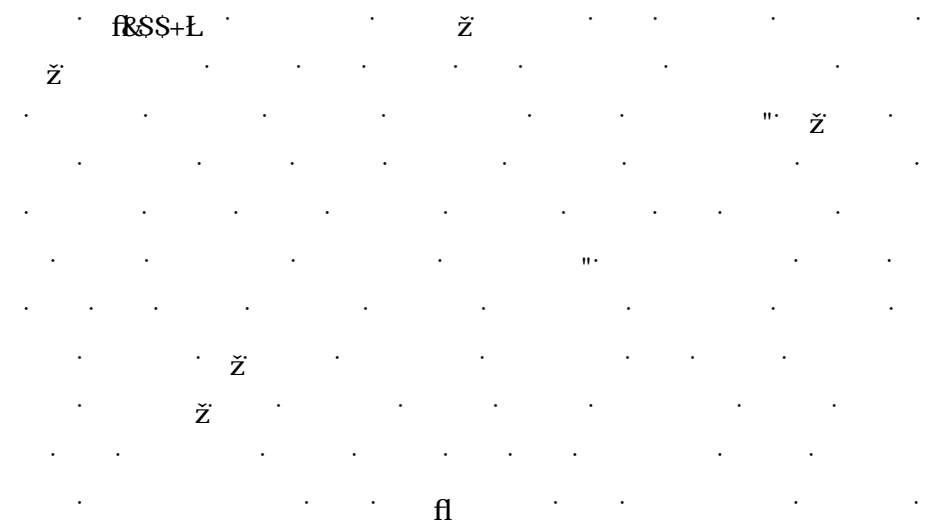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9gWVYXcf% -- Ez f&SS(E) "

[그림 -1] 육아휴직급여의 맥락

나. 급여지원의 사각지대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ž
.....
..... "

2) 남성 육아휴직

..... ž f&S%*L ' &S%(.....
..... ž ž ž
..... ž
..... " * \$1
..... " f&S%*L '86
fl L ž
..... "
..... "
ž ž
fl ž &S% E'
.....
..... fl ž &S% E'
..... ž
..... % S %SS1
..... "
ž fl ž &S% UE'
.....
..... ž
f&S%*L ei chL " ž

. ž
 ž
 fl ž &S% E'
 f&S% L ž
 ž ž
 ž "
 % "
 ž
 ž ž
 "
 ž ž
 fl ž &S% E'

3) 사후지급금

. &S%
 ž % 1 *
 &S% + & 1 "
 ž ž "
 f&S% L ž
 ž ž
 "
 f&S% UL ž ž
 ž ž
 " ž
 ž ž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ž.....
..... ".....
..... ž.....
..... ž..... fl..... ž &\$% UE'

4) 자동육아휴직제도

..... ž..... &\$%*.....
..... fl..... ž &\$%* E'.....
..... ž.....
..... ž.....
..... ".....
..... ž.....
..... ž.....
..... fl..... " &\$% "%&"+ "L..... " &\$%+.....
..... % " 1 ž ' +") 1.....
ž (+ "&..... fl..... ž &\$% E'

라. 모성보호사업 재정평가

..... &..... ž.....
..... "..... ž..... ž.....
..... ž.....
..... ".....

fl ž &SS+L'

"

" ž

fl

ž &S%L' fl&SS) L

ž

ž ž

ž

ž

ž

fl ž &SS) L'

86

fl&S% UL ž

" ž

ž

ž

%SS1

"

ž

ž

fl ž &S% UL'

ž

ž

ž

ž

. ž
 ž
 " ž
 ž
 "

마. 재정 효율화 방안

. f&SS+L
 ž
 fl ž &SS+L'
 ž ž
 " f&S%(L
 ž ž
 fl
 ž ž &S%(L'
 fl
 ž &S%(L' fl ž &S%*L
) fl L %
 ž
 (S1 fl ž

"
 ž ž
 fl ž &S% E' f&S%(L
 ž
 ž ž "
 f&S%(L ž
 fl ž ž &S%(E'
 ž ž
)E ž ž " ž
 ž " ž
 ž ž
 ž ž
 " ž
 ž
 ž
 fl ž &S% UE'

)L ž
 fl ž &S% Ež
 ž "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fl ž &S%
 E'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표 -7〉 주요 쟁점사항 선행연구 요약

저자	포함제도	육아휴직제도(모성보호) 성격	사각지대 범위	커버리지 확대방안	재원 개편안
강민정 외 (2018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 임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급여 및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 퇴사자 - 출산 후부터 출산휴가 사용까지 퇴사자 - 출산휴가 복귀 후부터 육아휴직 까지 퇴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 출산전 퇴사자(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신설 및 일반조세 비중 높이는 방안 - 건강보험과 결합 - 별도기금(부모기금 또는 가족기금 등)을 신설하여 일반조세 중 일부 할당, 육아휴직 제도 재원으로 일정부분 전입을 법률 규정화
류정희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유사 모성보호제도(국민 행복카드,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목표로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가장 비슷한 제도이면서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마가입대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는 시간적 사각지대 없이 제도가 존재하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한정하기에 제도적 사각지대를 가짐 -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제도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재원 방안에 대해, 1)고용보험 급여사각지대+제도적 사각지대 대상자 모두 일반예산 지원하는 방안, 2)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출산급여제도 모두 월 50만원의 일반예산 지원 방안 제시
김상호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중 임금근로자: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농림어업, 극단시간 근로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출산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 급여수급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자 혹은 출산직후 퇴사자: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등 - 임신 중 출산이전 퇴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임금근로자 위주 적용: 사회보험 제도 활용 운영이 용이하나,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 - 2인) 취업자 위주 적용[저자 선호 안]: 법적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가능하나, 소요재원 조달 어려움 X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조세투입으로 정액급여 지급 - 3인) 비취업자까지 적용: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적용대상자에게 3개월 정액급여 지급, 조세로 재원 충당(3개월 50만원 지급) - 1인)고용보험 안: 고용보험과 고용노동부 현행 역할 유지, 출산한 모든 여성취업자에게 조세로 정액 출산급여(3개월, 월50만원) 지급 - 2인)건강보험 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관은 기존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높지 않음. - 3인)고용보험+건강보험(조세)안[저자 선호 안]: 기존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담당, 추가 인원은 건강보험 담당, 고용보험에는 출산급여에 상응하는 정액을 조세로 지원, 임금근로자 이외 취업자는 건강보험에서 정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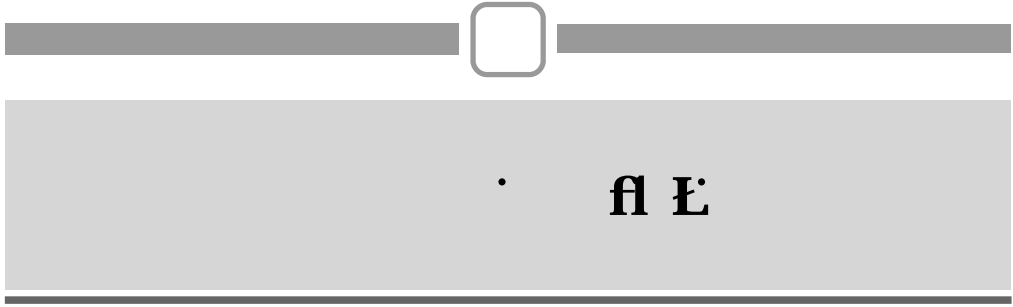
저자	포함제도	육아휴직제도(모성보호) 성격	사각지대 범위	커버리지 확대방안	재원 개편안
김난주 외 (2016)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직장어린이집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 일가정 양립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 고용보험가입자 중 급여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로 단축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휴가직전 6개월 계속 가입 → 최근 2년 이내 총 가입일 180일로 변경	-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재원의 개편 필요: 1)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수급요건의 모성보호 급여 사각지대 발생을 완화, 2)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원 한계를 방지
김은지 외 (2016)	육아휴직 및 관련제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은 기본적 근로기준과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가짐.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의 의무 정도는 약함.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용의 일부이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비용의 일부임.	-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 고용보험가입자 중 급여수급요건 미충족자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규정 삭제 -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및 소득 대체율 인상	- 고용보험 기금 내 일반회계 지원 확대 - 제3의 기금(가족수당) 신설
한지영 (2016)	육아휴직제도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 육아휴직 부모할당기간 설정 - 아빠의 달 제도를 급여 인센티브 제도로 수정하여 소득대체율과 상한액 단계적 상황조정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60% 이상 단계적 상황조정	- 재원 안정적 확보와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사회보험 신설 제안
김혜원 (2014)	- 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자영업자)	- 노동시장 가임기 여성에 대한 휴직 급여를 개별기업이 아닌 사회전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 방지	- 현행체계 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 건강보험으로 이관 - 고용보험기금 내에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 계정분리 - 부모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험기금 신설
윤자영 (2014)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모성보호,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및 고용단절방지	- 1) 출산직후 퇴사자 - 2)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사업장 종사자)	- 사용주의 모성보호제도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태도 변화 필요 - 근로자 휴가권 보장 - 급여의 사회적 분담 확대(새로운 기금	-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금 검토 필요 - 즉 육아휴직 급여 재원 확대 및 통일화를 통해 현재 근로자뿐 아니라 과거 근로이력을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저자	포함제도	육아휴직제도(모성보호) 성격	사각지대 범위	커버리지 확대방안	재원 개편안
				구조의 검토 필요)	갖는 여성(비정규직, 자영업자, 학생 등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이상 관계 없이)까지 포괄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
노호창 (2014)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부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고령법 제19조1항, 고령법 시행령 제10조 위헌규정 여부 검토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와 미만 근로자간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	-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한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할 필요
장지연 외 (2013)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부성휴가제도	- 일생활균형 정책목표(국민 삶의 질 향상, 여성고용촉진, 성평등)	- 1) 출산직후 퇴직: 수급자격 있는 여성 근로자의 약 8% - 2) 제도자체가 일부 정책대상을 누락하는 문제(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보호) - 3) 제도내 사각지대(미준수, 미활용)	- 자영업자와 사회보험 미가입노동자에게 정액급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필요 - 1안) 고용보험 체제 유지하면서, 일반 회계 예산 투입, 모성보호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여 정액 모성급여 지급, 관리는 모두 고용보험 - 2안) 모성보호급여의 대상을 취업자로 확대, 건강보험으로 이관 - 3안) 모성보호급여 대상 확대를 전제로 독립적인 기금을 창설하는 안	- (원칙)제도 대상자 범위와 재원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고용보험 체제 유지 시, 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양립계정을 독립,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재정 분리하여 장기적 안정성도 필요 - 건강보험체계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여분에 비례한 소득대체급여 지급 가능
이삼식 외 (2013)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소규모 영세업종, 비정규직, 자영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단기 근로자	-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하며, 도입 시 급여대상에 자영업자 포함(소득 기준 보험료 적용, 소득파악 어려운 자영업자는 최저기준 보험료 징수, 고정액으로 최저급여 지급)	- 부모보험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등의 보험체계에서 보험료 징수하여 확보하며, 사회보장세를 확대(고용부 부담 확대, 단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은 정부가 대신 기여금 납부)
조준모 (2013)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특고 등)	- 재직근로자 모성보호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활용도 제고 및 경력단절 방지를 감안 필요 -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구성의 다양화 - 고용보험 체계 재구조화(모성보호를 고용보험의 별도사업화)	-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사업을 별도로 하여, 일반회계나 기타 기금을 투입 - 모성보호기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재원 구현 (일반회계 및 기타기금 등)

저자	포함제도	육아휴직제도(모성보호) 성격	사각지대 범위	커버리지 확대방안	재원 개편안
박선영 외 (2011)	모성보호제도 - 산전후 휴가제도 - 유산산후휴가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 임신부의 근로조건 개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	-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 고용보험 사각지대(자영업자, 비정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기타 특고 등)에 있는 대상자 확대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수급권 강화: 이직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유보 필요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점이 산전후휴가기간 및 이후 30일인 경우, 계약기간연장 -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격(180일 기준)을 부부의 피보험가입기간 합산하여 적용 - 교육 및 홍보(대상자, 기업주, 경영진 등) - 출산후 복귀자 지원제도 확충	- 모성보호의 목적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담당할 필요 - 모성보호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분 증가 필요(고용보험 기금의 모성보호급여는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에서 신규대상자 급여 체계 마련)

. : f&s% E' ') ! ' , dd "



%* 들어가며 (%)
&" 육아휴직제도의 쟁점별 검토 ('
' "' 육아휴직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자원마련 방향 *%
("' 소결 , &

#2

· · · · ·

· · · · · ž · · · · ·

· · · · · ž · · · · ·

· · · · · fl E · · · · ·

· · · · · ž · · · · ·

· · · · · ž ž ž ž ž · · · · ·

· · · · · ž · · · · ·

· · · · · ž · · · · ·

· · · · · ž ž (· · · · ·

· · · · · ž · · · · ·

· · · · · ž · · · · ·

· · · · · *E

〈표 -1〉 육아휴직제도의 쟁점

쟁점사항	내용
육아휴직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대상 (커버리지 확대)	-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지원정책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제도로,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정책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육아휴직제도로 어느 범위까지 커버해야 하는가? 커버리지 확대와 재원확보의 문제

*E · · · · · ž · · · · · ž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쟁점사항	내용
급여체계 개편	- 일정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짧게라도 사용하게 하는 정책설계가 적절한가? - 소득대체율, 상한액, 하한액 상향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상향 수준과 기준은? -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수혜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실효성과 차별적 요소에 대한 평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안
사후지급금제도 검토 및 복귀지원 방안	- 사후지급금제도가 복귀를 촉진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육아휴직 후 복귀를 촉진하는 다른 방안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급여지급)	- 현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급여는 한쪽에만 지급되고 있음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경우 모두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에 향후계획으로 포함되었음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은데, 여전히 사용은 저조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단축시간, 분할횟수 등 사용의 자율성 확보 방안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ㄷ

&&

ㄷ

&&

ㄷ %& ㄷ % "

〈표 -2〉 서면자문 전문가 리스트

연번	직위	소속(전공)
1	교수	경제학과
2	교수	경제학
3	교수	사회복지학과
4	연구자	국책연구기관
5	연구자	국책연구기관
6	연구자	국책연구기관
7	교수	사회복지학과
8	교수	법학과
9	연구자	국책연구기관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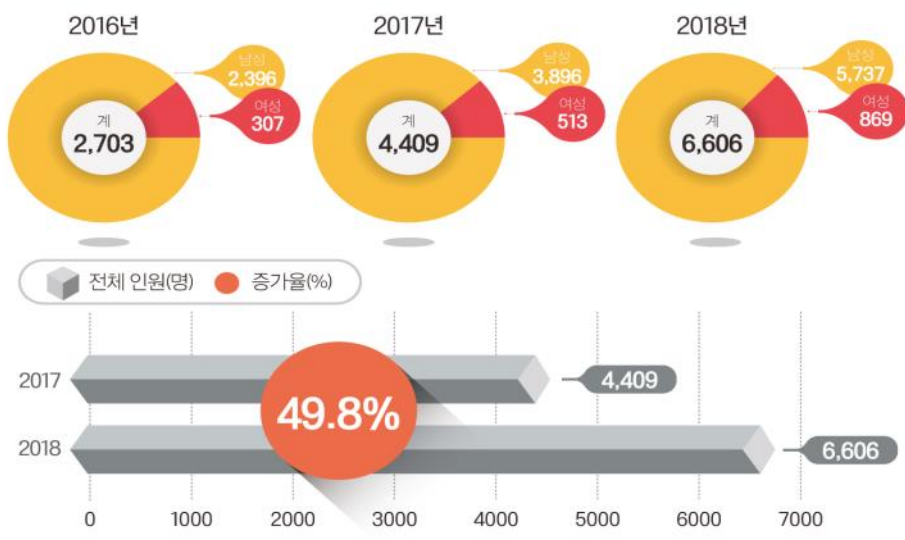
. "
 ž
 "
 &
 ž &S%(.
 fl ž &S% lž "
 " ž
 " % S ž
 ž' &&* ž (. &++
 "
 ž ž ž ž
 ž " ž
 "
 ž ž
 " ž
 " ž &S%+ ž
 & S ž % * ž , %*1 ž , , "& fl
 ' (ž &&% L " ' 86 ' &S%+
 & - ž ' & ' "
 ž
 "
 ž "
 ž , S1
 %(- " % S
 " %S1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궀\$* 궀 · · ·)궀' + ·, *", 1
 f&\$%* ·, , "1 궀 &\$%+ ·, , "(1 E"
 · · · · · 궀
 · · · · ·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단위 :명



[그림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궀 · · · % S · · · %SS1

%
 fl 궀 &\$% UE"

"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표 -4〉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율

(단위: %)

구분		10인 미만	10인~30인	30인~100인	100인~300인	300인 이상
육아 휴직	'15년	58.2	69.0	71.2	77.2	81.9
	'16년	58.8	70.3	72.4	77.2	83.7
	'17년	60.5	72.0	73.2	78.6	86.5
구분		10인 미만	10인~30인	30인~100인	100인~300인	30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년	74.1	81.0	79.1	75.5	87.1
	'16년	76.1	74.8	77.5	53.9	86.4
	'17년	74.9	76.2	74.9	83.5	87.0

· '86"

f&S% UE

ž

*

%

ž

& 1

ž

S1

ž

fl

ž &S% UE'

ž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마. 부모 동시육아휴직 허용

..... fl L fl L
..... "
..... ž
..... " +\$ fl
..... E% & ž
..... 'S
..... " ž
..... ž
..... "
..... &+
fl) ž%& L
..... "
..... "
..... "
..... &% %&
..... ž
..... ž ž
..... ž ž
..... " ž
..... ž ž
..... " ž
..... ž
..... "
..... "
..... ž
..... "
..... ž

. " .

 ž
 " ž
 "
 ž) \$\$
 "
 fl Ł "
 " +\$ % &
 ž
 "

바. 자동육아휴직제

.
 ž " .
 " ž
 +(.
 +Łž
 ", Ł " .
 ž
 ž
 ž

+Ł ž \$\$% "%& "ž ž \$\$% "&%"
 , Ł ž \$\$%+"("%%"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ž .
.. . . . ž .
. ž .
. ž .
. ž .
" ž .
ž ž .
.. . . . ž .
ž ž .
.. . . . ž .
" ž .
ž ž .
.. . . . ž .
" ž .
ž ž .
.. . . . ž .
" ž .
ž ž .
.. . . . ž .
" ž .
ž ž .
.. . . . ž .
" ž .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ž .
.. . . . ž .
. ž .
.. . . . ž .
.. . . . ž .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 ž
 "
 ž
 " %
 ž
 " %
 ž "
 *
 ž
 "

 fl ž &\$% V. ,) ! , * E'
 % ' S ž ž
 % "
 ž
 fl L % fl E
 " % ') ž
 "

 ž ' S fl ' * S L "

 ž ž
 "

 % (S
 "
 " ž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ž
 ž · · · · · " · · · · ·
 · · · · · ž · · · · · ž · · · · ·
 · · · · · ž · · · · · ž · · · · ·
 · · · · · fl · · · · · ž &\$% V. ·, -!- SE"

아.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화

· · · · · fl Ł · · · · · ž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ž · · · · · ž · · · · ·
 ž · · · · · "

〈표 -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단위: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육아 휴직	전체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99,199	10.1
	남자	2,293	3,421	4,872	7,616	12,043	17,662	46.7
	구성비	3.3	4.5	5.6	8.5	13.4	17.8	-
	여자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81,537	4.4
	구성비	96.7	95.5	94.4	91.5	86.6	8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	736	1,116	2,061	2,761	2,821	3,820	35.4
	남 자	44	84	170	378	321	550	71.3
	여 자	692	1,032	1,891	2,383	2,500	3,270	30.8

〈표 -6〉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2018)

(단위: 명, %)

		전체	10인 미만	10인 ~30인	30인 ~100인	100인 ~300인	300인 이상
육아 휴직	지원인원 (%)	99,199 (100%)	15,907 (16%)	12,197 (12%)	11,932 (12%)	13,065 (13%)	46,098 (46%)
	지급액(백만원) (%)	839,083 (100%)	115,233 (14%)	99,249 (12%)	95,453 (11%)	108,275 (13%)	420,873 (50%)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인원 (%)	3,820 (100%)	1,115 (29%)	710 (19%)	592 (15%)	416 (11%)	987 (26%)
	지급액(백만원) (%)	15,663 (100%)	5,785 (37%)	3,159 (20%)	2,079 (13%)	1,398 (9%)	3,243 (21%)

· 86

· · · · · ž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fl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S *S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fl	ž	Ł	"
		ž	
	"	%SS	
	"		
	ž		
	"		
	ž		
ž			
		ž	
	ž		"
			F/ 8
		" &S%+	
ž F/ 8			"
			"

〈표 -7〉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목적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남녀 구분없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휴직자 발생기관과 청년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 과학기술인들을 매칭하여 업무공백의 최소화와 과학기술 분야로의 경력개발을 지원
지원내용	X참여기관 : 채용(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최대 12개월, 학,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 및 맞춤형 인력 추천 X참여자(대체인력) :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신청자격	X참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수행기관 - 정부지원금 대비 기관부담금 30% 이상 대응 필수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중에 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가 발생한 기관 X참여자(대체인력)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신청마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 ····· ž ····· ·····

· " ····· ····· C978 ·

: Ua]`m 8UHVUgyl hd. ##k k k "cYVX"cf[#Yg#ZUa]`m#XUHVUgY"\ha ž

&S% ") "' S"L ····· ····· %SS ž ·····

····· ····· " ····· ·····

····· ····· %SLž ·····

····· " ····· ·····

····· ž ····· ž ·····

····· ž ž ····· %SS ·····

····· %SS ž ····· ž ·····

····· " ž ž ž ·····

····· ž ž ·····

····· " ž C978 ····· &S%(·····

····· &S%+ ····· ž ·····

&S% 1 ž " "(1 ·····

····· ž ·····

····· " ·····

%SL ·····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표 -9〉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 사용자 통계

	Male share of recipients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	Number of users/recipients per 100 live births (출생아 수 100명 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Women(여성)	Men(남성)
스웨덴	45.0	366.6	299.5
아이슬란드	45.6	160.1	134.3
노르웨이	40.8	145.2	100.1
덴마크	24.1	140.1	44.4
독일	24.9	96.3	31.9
핀란드	18.7	142.6	32.8
오스트리아	4.3	157.9	7.0
프랑스	3.5	61.9	2.2
캐나다	13.6	42.7	6.7
호주	0.5	54.2	0.3
한국(2014)	4.5	16.8	0.8
한국(2017)	13.4	21.8	3.4

· C978 : Ua]m 8UHMy f&S%L C978 : WWUhcbg VgYX cb']bZfa Uhcb' Zca' bUhcbU' a]blgf]Yg UbX gUhg]W' cZ]Wg' Acgž D" f&S% E-bmfUhcBU' FYj]Yk' cZ @YJ Y' Dc]WYg' UbX FYgUFW' &S%" " 5j U]UVY' Uh' \hd.##k k k"YUj YbYk cf_ "cf[#`dSubXSfsfYdcflg#ž f&S%L ž f&S% E

ž " ž " ž "

나.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적용범위와 재원구조¹¹⁾

ž
%L f&S% L ž

ž " %S\$1 .
 & + .
 " fH\Y`]bhYfbUjcbU`
 bYkcf_`cb`YUjY`dc`jWYg`UbX`fYgYUFWL . f6`i a `YhU"ž &S% Ł
 ž f&S% UL
 " ž
 " ž
 ž ž
 " "
 " "
 " fl ž Ł
 ž ž
 " "
 ž ž
 ž ž
 B|_`Ug`@`Z`fYb` ž &S%*"(" * "E"
 " "
 ž fl &1 Ł ž
 " "
 ž ž ž ž
 ž ž ž ž
 " " ž ž
 ž ž ž "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fDUFYbHU`VYbYZ]hž

6Ug]gYhfb[YX` 9`hfb[YXD`i g` L` ""

. %& fž& L` &

fž(. L` ž , "

*) 1

ž ' SS fidd` ') L`

. " ' S

. ž ž ž

" "

. ž fl L` ž

. fl

. L` "

. "

. fAUhfb]hmDfchW]cbž Ai hfgWi hm L`

, , ž %* ž %Ss1

. " ž

. "

. "

. ž

. fl "- % # fž

. cdYfU]cbU` g ddcfh "

. %&

. % S1 "

. fl Ua]`m6i fbXYbg` 9eUi `]nU]cb` : i bXž : Ua]`Yb`UgY`

bUi g` `Y]WgZcbXL` +S1 ž S1 "

. fl (") 1 L` ž

ž ž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 %&L!
 fV\]`XWUFY
 U`ck UbWž ?]bXYfVYfYi i b[g YXL "
 ž
 "
 % ž
 ž "
 % ž (- ž %&ž **
 ž "
 "
 %&ž ** . ddd %ž - \$
 ž % %ž ž
 . &) \$ "
 % & #
 ž " , S1
 "
 ž
 ž
 "
 ž
 "
 fl L ž
 ž ž
 "

%&L 9i fcgUž 9i fcdYub`GcWU`GUhg]Wž GcWU`dfchW]cb. 5i gf]U!`GWYa Y%ž : Ua]mi
 6i fXYbg'9ei U]nU]cb': i bXž\hd. ##WU'Yi fcdU''Yi #fW]Xgl#Yggdfcg#bZc#XU#
 YggdfcgSdi `]SXU#ei U]U]hj Y#eVLgY#U gf]US`gWYa Y% "\ha ž . &S% "%S" S"
 % L &S%+ ž "
 " &S%+ "

fl ž + E'

ž ž

"

ž ž

"

ž "

ž ž

"

"

다.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

. 3

f&\$% Ł "

ž ž

"

ž ž %

ž *\$ ž ž

ž fl

ž &\$% . ' - E'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표 -11〉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분만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고용보험 적용대상			
		미가입자		가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특고	초단시간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퇴사자	자격미충족자	출산급여 수급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사각지대						

... f&S% . (\$L

... .. " "

ž

ž ž

ž

" "

ž

" ž % % S

ž

" ž

" "

〈표 -12〉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각지대의 종류와 비적용 사유

사각지대 종류	미충족 비적용 사유	대상
급여 사각지대	휴직요건 미충족(고용유지)	임신중 퇴직자 또는 출산후 퇴직자
	고용보험 기여조건 미충족	자격미달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형태)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업종) 고용보험 적용제외업종 근로자
	근로계약 부재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사각지대 종류	미충족 비적용 사유	대상
(잠재적 제도적용범위1)	공식적 소득 부재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f&S% (SL
 %L f&S% L
 f
 &S% . %L
 ž
 &S" &
 &S1 %L
 ž
 &# ") 1 ž %#
 f L
 %(") 1
 ž
 ž
 ž
 " %
 S"(1 ž
 ž ž
 % " &
 ž "

%L ž &S% f %S- L f, ž, S L - *"
 ' 1 %SS1 f! ž ž f! hd. ##k k k"
]bXl "[c _f#dcH#a U]b#9UW8hDUJ Y8 YHJ"Xc 3]Xl SWXl%) S(ž &S%)" * "L

<표 -13>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15세~49세 여성인구 분만여성 398,760 (100.0%)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전업주부, 퇴직자 등	실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 특수고용	고용보험비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적용제외	미가입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			현재 적용대상자			
출산급여 우선적용대상 1		출산급여 우선적용대상 2						
무소득자 181,339(45.5%)	사업소득자 46,956(11.8%)	근로소득자 13,607(3.4%)	자격미달 1,735(0.4%)	출산후 퇴직자 15,412(3.9%)	임신중 퇴직자 42,144(10.6%)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80,502(20.2%)	25,279(6.3%)	고용 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소득무) 53,768(13.5%)	지역가입자 23,645(5.9%) 4,946(1.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42,106(35.6%)					건강 보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소득무) 114,830(28.8%)	직장피부양자 21,465(5.4%) 7,893(2.0%)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소득무) 10,643(2.7%)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1,631(0.4%) 612(0.2%)							공무원 교직원
의료급여(소득없음) 2,098(0.5%)	의료급여 215(0.1%) 156(0.0%)							의료 급여

* 미가입자 : (소득없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ž

.....) S

..... &S%

..... fl ž &S% ", " & E'

..... "

..... "

..... ž

..... "

..... ž S ž

..... "

..... ž ž ž

..... ž

..... ž ž

..... "

..... "

..... ž

..... ž

..... "

..... ž

..... "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S% / ž &S%) / ž &S%* / ž &S%* / ž &S%+ /
 ž &S%+Lž

 fl ž &S%* L'
 "
 "
 ž
 " f&S% L
 "
 ž
 ž
 "
 " fl ž
 &S%+Lž fl ž &S%+L
 ž &S&&
 "
 fl ž &S%* L

 "
 ž
 "
 ž
 "
 ž
 "
 ž f&S% L
 "
 ž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 %

ž

fl

Ł

ž

ž

#

ž

!

ž

ž

ž

ž

ž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ž
..... "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 ž
..... ž
..... ž
..... ž
..... "

&ž

..... ž
..... fl ž %& ž
..... "
..... &S%+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육아휴직 활용 분석 , +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 -)
' * 육아휴직급여 대상확대에 따른 소요재정 %S+

#

<표 -1> 육아휴직 급여체계 변화

구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첫 3개월	통상임금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통상임금 80%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9월부터)	좌동	좌동
3개월 이후	상동	좌동	좌동	통상임금 50% 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상한 150만원	상한 200만원 (둘째)	상한 200만원 (첫째)	상한 250만원

가. 분석 자료와 방법

86

0 !&2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ž ž ,

&S%+

" " 86 &S% & ' ' \$

" " &S%* &S%+ &S%

& ' ' \$

ž , &S%+ -

" " ž

" " 86 "

")

"

&S%* + % &S%*

%& ' ' \$ &S%+ + % &S%+ %& ' ' \$

"

&S%+ &S%*

"

" &S% +) 1

' \$ " &S%+

" -

"

나. 육아휴직제도 변화의 효과 추정

$\Delta S_{i,t} = \beta_0 + \beta_1 \Delta S_{i,t-1} + \beta_2 \Delta S_{i,t-2} + \beta_3 \Delta S_{i,t-3} + \beta_4 \Delta S_{i,t-4} + \beta_5 \Delta S_{i,t-5} + \beta_6 \Delta S_{i,t-6} + \beta_7 \Delta S_{i,t-7} + \beta_8 \Delta S_{i,t-8} + \beta_9 \Delta S_{i,t-9} + \beta_{10} \Delta S_{i,t-10} + \beta_{11} \Delta S_{i,t-11} + \beta_{12} \Delta S_{i,t-12} + \beta_{13} \Delta S_{i,t-13} + \beta_{14} \Delta S_{i,t-14} + \beta_{15} \Delta S_{i,t-15} + \beta_{16} \Delta S_{i,t-16} + \beta_{17} \Delta S_{i,t-17} + \beta_{18} \Delta S_{i,t-18} + \beta_{19} \Delta S_{i,t-19} + \beta_{20} \Delta S_{i,t-20} + \beta_{21} \Delta S_{i,t-21} + \beta_{22} \Delta S_{i,t-22} + \beta_{23} \Delta S_{i,t-23} + \beta_{24} \Delta S_{i,t-24} + \beta_{25} \Delta S_{i,t-25} + \beta_{26} \Delta S_{i,t-26} + \beta_{27} \Delta S_{i,t-27} + \beta_{28} \Delta S_{i,t-28} + \beta_{29} \Delta S_{i,t-29} + \beta_{30} \Delta S_{i,t-30} + \epsilon_{i,t}$

〈표 -2〉 급여 인상 전후 통상임금 구간별 소득대체율과 급여액

구 분		0-87만원	87-125만원	125-187만원	187-250만원	250만원 이상
인상 전 (전 기간)	소득대체율	57% 이상	40-57%	40%	40%	40% 이하
	급여액	50만원	50만원	50-75만원	75-100만원	100만원
인상 후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80% 이상	80%	80%	60-80%	60%이하
	급여액	70만원	7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Delta S_{i,t} = \beta_0 + \beta_1 \Delta S_{i,t-1} + \beta_2 \Delta S_{i,t-2} + \beta_3 \Delta S_{i,t-3} + \beta_4 \Delta S_{i,t-4} + \beta_5 \Delta S_{i,t-5} + \beta_6 \Delta S_{i,t-6} + \beta_7 \Delta S_{i,t-7} + \beta_8 \Delta S_{i,t-8} + \beta_9 \Delta S_{i,t-9} + \beta_{10} \Delta S_{i,t-10} + \beta_{11} \Delta S_{i,t-11} + \beta_{12} \Delta S_{i,t-12} + \beta_{13} \Delta S_{i,t-13} + \beta_{14} \Delta S_{i,t-14} + \beta_{15} \Delta S_{i,t-15} + \beta_{16} \Delta S_{i,t-16} + \beta_{17} \Delta S_{i,t-17} + \beta_{18} \Delta S_{i,t-18} + \beta_{19} \Delta S_{i,t-19} + \beta_{20} \Delta S_{i,t-20} + \beta_{21} \Delta S_{i,t-21} + \beta_{22} \Delta S_{i,t-22} + \beta_{23} \Delta S_{i,t-23} + \beta_{24} \Delta S_{i,t-24} + \beta_{25} \Delta S_{i,t-25} + \beta_{26} \Delta S_{i,t-26} + \beta_{27} \Delta S_{i,t-27} + \beta_{28} \Delta S_{i,t-28} + \beta_{29} \Delta S_{i,t-29} + \beta_{30} \Delta S_{i,t-30} + \epsilon_{i,t}$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표 -3〉 급여 인상 전후 통상임금 구간별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 이용자수와 비중
(단위: 건, %)

구 분		87 만원 이하	87-125 만원	125-187 만원	187-250 만원	250 만원 이상	합계
인상 전	이용자수	446	1,759	19,480	16,056	18,079	55,820
	비중	0.8	3.15	34.90	28.76	32.39	100
인상 후	이용자수	358	1,440	16,286	16,133	18,806	53,023
	비중	0.68	2.72	30.71	30.43	35.47	100
합계	이용자수	804	3,199	35,766	32,189	36,885	108,843
	비중	0.74	2.94	32.86	29.57	33.89	100

· 86
· S z f&S%"-% &S%"&& "L · f&S%"-% &S%"&& "L
O ! (2 · · · · · " · ·
· · · · · SS · · · · ·
· · · · ·) S" % · · · · · (+, & · · · · · z' SS · · · · ·
· · · · · " · · · · ·
· · · · · SS · · · · ·
· · · · · "

〈표 -4〉 급여 인상 전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 이용자수와 비중
(단위: 건, %)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인상 전	이용자수	4,046	3,446	6,446	6,612	7,188	28,082	55,820
	비중	7.25	6.17	11.55	11.85	12.88	50.31	100
인상 후	이용자수	4,194	3,558	6,338	6,622	6,954	25,357	53,023
	비중	7.91	6.71	11.95	12.49	13.12	47.82	100
합계	이용자수	8,240	7,004	12,784	13,234	14,142	53,439	108,843
	비중	7.57	6.43	11.75	12.16	12.99	49.1	100

· 86
· S z f&S%"-% &S%"&& "L · f&S%"-% &S%"&& "L
O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 %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출산자	육아휴직 이용률	출산자	육아휴직 이용률
87만원 미만	0.86	54.65	0.81	45.95
87-125만원	2.43	50.70	1.90	55.97
125-187만원	37.29	57.89	33.03	56.04
187-250만원	28.89	63.48	30.31	63.58
250만원 이상	30.54	67.90	33.96	67.55
합계	100.00	62.36	100.00	62.15

〈표 -5〉 급여 인상 전후 통상임금 구간별 출산자 비중과 육아휴직 이용률 분포 (단위: %)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출산자	육아휴직 이용률	출산자	육아휴직 이용률
87만원 미만	0.86	54.65	0.81	45.95
87-125만원	2.43	50.70	1.90	55.97
125-187만원	37.29	57.89	33.03	56.04
187-250만원	28.89	63.48	30.31	63.58
250만원 이상	30.54	67.90	33.96	67.55
합계	100.00	62.36	100.00	62.15

· 86
 · L
 · S
 · O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2 ž
. ž
. "
. ž
% S & S " , +
. " & S
. %SS % S
. "
. ž ž "
. ž
. "
0 !) 2 ž
. "
. "
fDfcdYbg|miGWfY A UHW]b[L
. "
. "
. ž
. ž
. "
. ž
. ž ž "
. "
. ž
0 ! * 2 ž
. "
BYUYgi bY][\ Vcf A UHW]b[.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Table with 5 columns: 구 분, 전체 표본 (계수, 표준오차), 성향점수매칭 표본 (계수, 표준오차).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87만원 미만 집단*제도 변화 이후', '87-125만원 집단*제도 변화 이후', etc., and summary statistics like 'Observations' and 'R-squared'.

〈표 -6〉 정책 변화가 계층별 육아휴직 이용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전체 표본		성향점수매칭 표본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87만원 미만 집단*제도 변화 이후	-0.058**	(0.028)	-0.098***	(0.031)
87-125만원 집단*제도 변화 이후	0.034**	(0.016)	0.005	(0.017)
125-187만원 집단*제도 변화 이후	-0.012**	(0.006)	-0.203***	(0.006)
187-250만원 집단* 제도 변화 이후	0.006	(0.006)	-0.083***	(0.006)
87만원 미만 집단	-0.020	(0.018)	0.008	(0.022)
87-125만원 집단	-0.047***	(0.011)	-0.022*	(0.012)
125-187만원 집단	-0.030***	(0.004)	0.165***	(0.004)
187-250만원 집단	0.006	(0.004)	0.098***	(0.004)
제도 변화 이후(2017.7 이후)	0.002	(0.004)	0.035***	(0.004)
상수항	0.540***	(0.116)	0.344***	(0.046)
Observations	159,282		153,100	
R-squared	0.097		0.118	

86" f&S% "+ "%! &S% "%&" %" L f&S% "+ "%! &S% "%&" %"
 E "
 &S "
 H % žH) 1 ž1 %S "
 ž ž "

\$ž / fi

fi Ł " "

가. 시계열 예측의 방법 : 평활법

fi ž
 &S% E' fU]cbUfm]a Y gY]YgŁ
 " "
 fga cch]b[Ł "%Ł

〈표 -7〉 평활법의 유형

구분	방법	적용 상황
평균평활법	단순평균 평활법	
	이동평균 평활법	
지수평활법	단일지수 평활법	
	홀트의 선형방식	추세가 있을 때
	홀트-윈터스 방식	추세 및 계절변동이 있을 때

fU] YfU]b['a Yh cXgŁ
 " "
 fM dcbYbh]U' ga cch]b['a Yh cXgŁ ž
 " "
 ž
 " ž
 f]a d'Y' Yl dcbYbh]U' ga cch]b[Ł
 "

%Ł f&S% : '%Ł %Ł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 · ' ü è û Ì ü æ ú ù ' · · · · · ' ü è û ' ü ø' ú ' ù

· · · · · fk Y[\ hX' a c j] b[' U j Y f U] Y L · · · · · ž

"

ž · · · · · fk c' h' Yl dcbYbhU' ga cch\] b[L · · · · ·

ž

"

"

ç û Ì ü æ ú ù ø' ú è ü ú è ù

û ø' ú ç ú è üü æ ú ù ú è

' ü û ç ü

· · · · · ç · · · · · ž · · · · ·

· < c' h' K] bhfg' · < c' h' · · · · ·

· · · · · " · · · · · ffYj Yž ffYbXž fgYgcbU] hñ · · · · ·

"

"

· flXX]hj Y gYgcbU' Yl dcbYbhU' ga cch\] b[L · · · · ·

ž

"

· · · · · ffYj YL · ç û ø' ú Æ_ü üü æ ú ù ø' ú è ü ú è ù

· · · · · ffYbXL · û ø' ú ç ú è üü æ ú ù ú è

· · · · · fgYgcbUL · Æû ø' ú ç üü æ ú ù Æ_ü

· · · · · flcfYWgH · ' ü û ç ü ü Æ_ü ü

· fa i' h d'] W]hj Y gYgcbU' Yl dcbYbhU' ga cch\] b[L · · · · ·

ž

"

..... fYj YL. 'z ũ Ĩ ü øú ùø' ú è ü ú è ù

..... ffYbXL. ' ũ ø' ú z ú è ùü øú ù ú è

..... fgYgcbUL. ' AEũ Ĩ ü øú ùEũ
z

..... fzFYWgH. ' ' ũ ũ ø' ü ùEũ ũ

..... ".....
z "
z
"

< c`hK jbhYf " < c`hK jbhYf

fjb! gLa d`YE "

ž "

ñ ñ "

ũ ü øú ùø' ú è ü ú è ž
ũ ø ú ú è ùü øú ù ú è
' ũ ũ ũ

..... "
..... "

ž! '% "

ž ž "

..... < c`hK jbhYfg
" GH5H5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 ·
 ··O Q ·1 ·CE% ·

1) 육아휴직자수 추계

· · · " · · · · · ž
 ž · · " ·
 O · !%\$2 · ž · ž · · · · ·
 &\$%\$ &\$% · · " ·

〈표 -10〉 출산전후 휴가자 비율과 육아휴직 이용률

(단위: 명, %)

년도	출생자수	출산전후 휴가자수	출산전후 휴가자 비율	육아휴직 대상자수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이용률	
	(1)	(2)	(2)/(1)	(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4)	(5)	(4)/(3)	(5)/(3)
2010	470,171	75,742	0.161					
2011	471,265	90,290	0.192					
2012	484,550	93,394	0.193	398,512	62,279	1,790	0.156	0.004
2013	436,455	90,507	0.207	489,019	67,323	2,293	0.138	0.005
2014	435,435	88,756	0.204	685,115	73,412	3,421	0.107	0.005
2015	438,420	94,590	0.216	730,733	82,467	4,872	0.113	0.007
2016	406,243	89,834	0.221	762,199	82,179	7,616	0.108	0.010
2017	357,771	81,093	0.227	774,766	78,080	12,043	0.101	0.016
2018	326,900	81,700	0.250	785,906	81,537	17,662	0.104	0.022

·Y!
 ·&\$% · · · · · ·Y"[c"_f
 ·?CG=CZ · " ·
 &\$%\$ &\$%+ · · · · ·Y! ž · · · · ·
 &\$% · · · · ·&\$% ·% ·&(· · · · ·

··O Q · · ·1 · ·CE fl # L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S%

. "
 " \$
 "
 "
 fl #
 L " &S%
 ž
 \$" & S &S%+
 " "
 " "
 " O Q 1 CE fl # L
 " O Q 1 ,
 "
 " ž ,
 & "
 ,
 "
 ž &S%& (. ž
 &S%* , "
 &S%,
 ,
 &S%* " &S%*
 , "
 O !%S2
 "
 &S%+
 " &S%
 " (.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ž
. " &S% "

· O Q 1' &S%+
.
. . . " . . . " %S\$ ž & \$
. " f&S% . (\$! (&L
. ž

. ž "
. ž ž
. "
. "

. . . " . . . 86
. "
. ž
. " ž
. ž

. ž "

%S(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0 · !%&2 "

〈표 -12〉 육아휴직자수 추계-급여액 인상으로 이용자수 변화없음

(단위: 명)

년도	출생자수	출산전후 휴가자 비율	출산전후 휴가자수	육아휴직 대상자수	육아휴직비율		육아휴직자 여성	육아휴직자 남성
					여성	남성		
	(1)	(2)	(1)*(2)	(3)	(4)	(5)	(3)*(4)	(3)*(5)
2019	309,000	0.236	73,062	783,226	0.101	0.030	79,106	23,216
2020	292,000	0.241	70,462	690,336	0.101	0.037	69,724	25,342
2021	290,000	0.246	71,390	741,394	0.101	0.044	74,881	32,456
2022	301,000	0.251	75,561	653,386	0.101	0.051	65,992	33,222
2023	312,000	0.256	79,839	574,006	0.101	0.058	57,975	33,243
2024	324,000	0.261	84,485	707,425	0.101	0.065	71,450	45,969
2025	336,000	0.266	89,247	633,776	0.101	0.072	64,011	45,663
2026	346,000	0.270	93,585	719,331	0.101	0.079	72,652	56,911
2027	356,000	0.275	98,021	735,652	0.101	0.086	74,301	63,402

· 0 · !% 2 "

〈표 -13〉 육아휴직자수 추계-급여액 인상으로 이용자수 증가

(단위: 명)

년도	출생자수	출산전후 휴가자 비율	출산전후 휴가자수	육아휴직 대상자수	육아휴직비율		육아휴직자 여성	육아휴직자 남성
					여성	남성		
	(1)	(2)	(1)*(2)	(3)	(4)	(5)	(3)*(4)	(3)*(5)
2019	309,000	0.236	73,062	783,226	0.130	0.030	101,819	23,216
2020	292,000	0.241	70,462	690,336	0.130	0.037	89,744	25,342
2021	290,000	0.246	71,390	741,394	0.130	0.044	96,381	32,456
2022	301,000	0.251	75,561	653,386	0.130	0.051	84,940	33,222
2023	312,000	0.256	79,839	574,006	0.130	0.058	74,621	33,243
2024	324,000	0.261	84,485	707,425	0.130	0.065	91,965	45,969
2025	336,000	0.266	89,247	633,776	0.130	0.072	82,391	45,663
2026	346,000	0.270	93,585	719,331	0.130	0.079	93,513	56,911
2027	356,000	0.275	98,021	735,652	0.130	0.086	95,635	63,402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

2) 육아휴직급여액 추계

&\$%+ " %\$\$1 & \$ ž

· fl L " %\$\$1 & \$ ž

· +\$ " \$S %

· % "\$* " &\$% %

· "

· "

· O Q 1

· "

· "

· "%

· "

〈표 -14〉 급여제도 개편(안)에 따른 여성 육아휴직자 급여 지출액 추계

년도	급여액 인상으로 이용자수 변화 없음			급여액 인상으로 이용자수 증가함	
	1인당육아휴직 급여액 (백만원)	육아휴직자 (명)	육아휴직 급여액 (십억원)	육아휴직자 (명)	육아휴직 급여액 (십억원)
	(1)	(2)	(3)=(1)×(2)	(4)	(5)=(1)×(4)
2019	15.67	79,106	1,239	101,819	1,595
2020	16.33	69,724	1,139	89,744	1,466
2021	17.01	74,881	1,274	96,381	1,640
2022	17.70	65,992	1,168	84,940	1,504
2023	18.42	57,975	1,068	74,621	1,375
2024	19.17	71,450	1,370	91,965	1,763
2025	19.95	64,011	1,277	82,391	1,644
2026	20.77	72,652	1,509	93,513	1,942
2027	21.62	74,301	1,606	95,635	2,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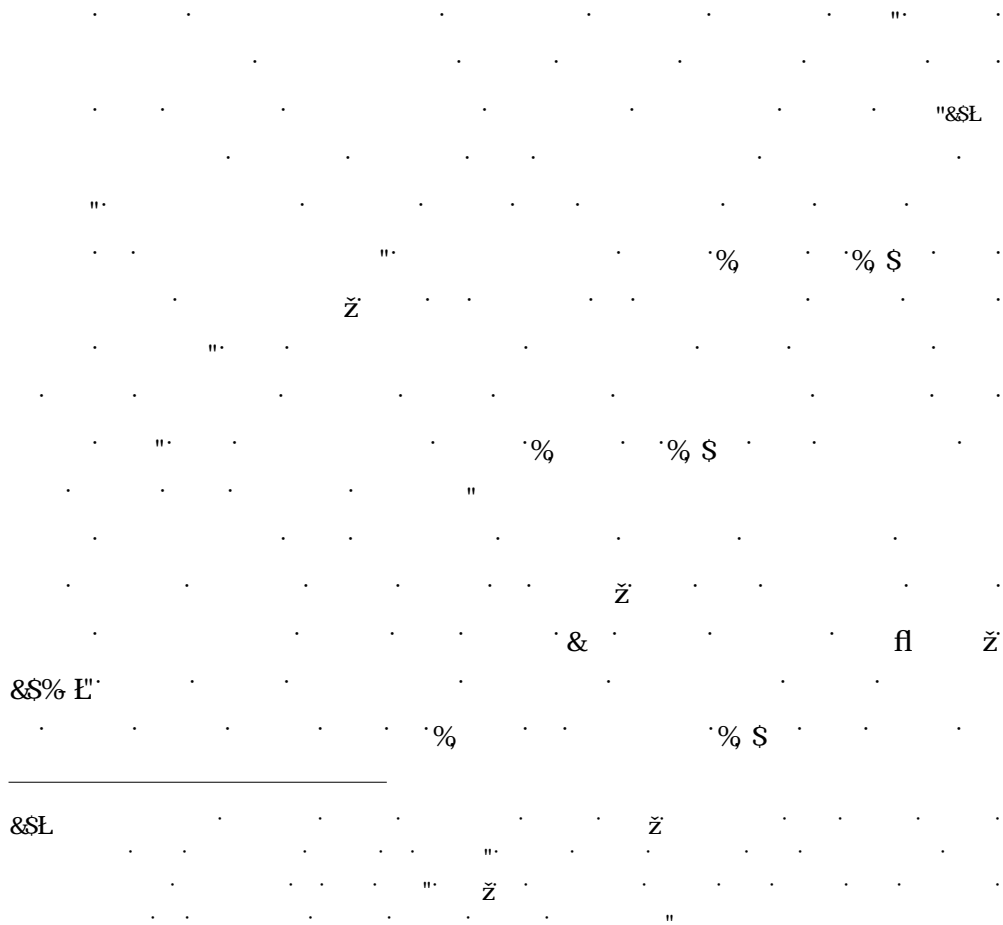
표 1.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단위: 천명, %

분만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고용보험 적용대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특고		초단시간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퇴사자	자격미충족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사각지대						

단위: 천명, %

[그림 -1]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S-

.....
..... "%&L:
.....
..... "

나. 소요재정 추계

.....
..... "
..... ž
..... "
..... "
..... "
..... "
..... "
..... "
..... "%
..... "%
..... ž
..... "
..... ž
..... "
..... ž
..... "

&L "% S
..... % ..% S ..% S
..... fl f&S% L' %
..... ž +&L'
&L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86	86
%	% \$
f&\$% L	f&\$% L
	"& L
	"

0 %2

û ø	ēñēi k è	ēñēi ù
&\$%*	&\$%	&\$%
"&L	f&\$% L	
) +ž) *	ž	(&ž)(ž
% ž %&	"	

<표 -17> 분만 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10명 이하	16,257	38.57	16,257	38.57
50명 이하	10,540	25.01	26,797	63.58
100명 이하	3,113	7.39	29,910	70.97
200명 이하	2,686	6.37	32,596	77.34
300명 이하	1,500	3.56	34,096	80.90
500명 이하	1,531	3.63	35,627	84.54
1000명 이하	1,916	4.55	37,543	89.08
1000명 초과	4,601	10.92	42,144	100.00

f&\$% / d"%\$) L

& L f&\$% L
 fD !%2 E
 & L % % \$ ž

〈표 -18〉 분만 후 퇴직자의 사업장 규모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10명 이하	5,408	35.09	5,408	35.09
50명 이하	2,573	16.69	7,981	51.78
100명 이하	728	4.72	8,709	56.51
200명 이하	806	5.23	9,515	61.74
300명 이하	496	3.22	10,011	64.96
500명 이하	546	3.54	10,557	68.50
1000명 이하	699	4.54	11,256	73.03
1000명 초과	4,156	26.97	15,412	100.00

· fSS% / d"%S+L

% · · · · · "·
 · · · · · ž
 · % · · · · · "·
 · &S%* · · · · · ž % · · · · · &S%*
 · · · · · % · · · · · + · · · · · "

〈표 -19〉 육아휴직 사용자수 및 급여지출액 추이

(단위: 명, 백만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수급금액	1인당 평균 급여액
2010	41,733	178,121	4.27
2011	58,137	276,261	4.75
2012	64,069	357,797	5.58
2013	69,616	420,248	6.04
2014	76,833	500,663	6.52
2015	87,339	619,663	7.09
2016	89,795	625,243	6.96

· f l L

· · · · · 0 %2 · · · · ·
 · · · · · (žSSS · · · · · "

· (SS), - "+* '1') +ž) * 'E' *"- *

ž · · · · ·
· · · · ·
(SS " · · · · ·

다. 실업급여와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S · · · · ·
· ž · · · · ·) S · · · · ·
· , S · · · · · " · · · · ·

& L · · · · ·
· " · · · · · " S · · · · ·) S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

〈표 -2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S%* · · · · · &S%* · · · · · *'
 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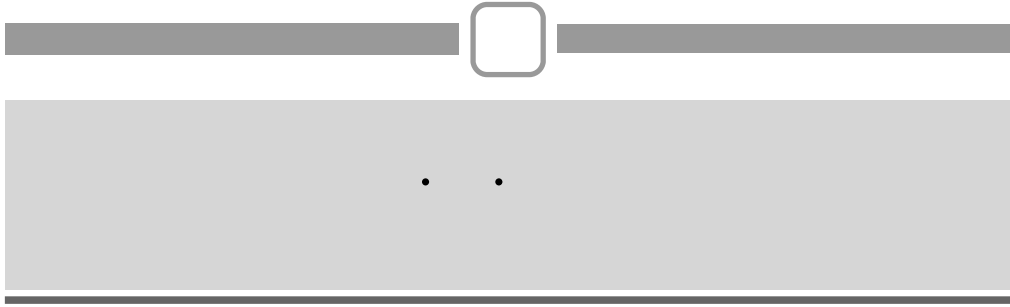
〈표 -21〉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2016년)

(단위: 명, 건, 백만원)

		종합인원	순인원 ¹⁾ (A)	건수	총 수급액(B)	1인당 평균 수급액(B/A)
전 체	계	1,303,691	1,278,833	5,014,494	4,895,395.8	3.83
	남	657,551	645,148	2,470,805	2,458,797.3	3.81
	여	646,140	633,685	2,543,689	2,436,598.5	3.85

% ž · · · · ·
 · &S%* · · · · · f&S%+L · · · · ·
 · · · · · % · · · · · ž
 ff " - * L · · · · · fl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2 · · · · ·
 · · · · · ž&S%* · · · · · "&L

&*L · · · · · ž · · · · ·



%* 단기적 개편 방안. 제도 활용률 제고 %&+
&* 장기적 개편 방안. 제도 적용범위 확대 %&&%

#2

Figure 1: A large, mostly illegible chart or table area, possibly representing data on parental leave usage. It contains faint text and symbols, including the Korean character '자' (Ja) and some percentages like '88%' and '1%'.

〈표 -1〉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포(2017)

(단위: %)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1개월	12개월
남성	22.6	8.8	10.9	15.6	9.2	32.9
여성	2.1	4.4	6.2	12.8	17.1	57.4
전체	4.9	5.0	6.9	13.2	16.0	54.1

%&S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

ž.....

..... ".....

..... ž.....

..... ž..... fl.....

ž &S% E'..... ž.....

!..... !.....

..... ".....

..... ž.....

..... "

..... ž.....

"..... ž.....

..... ž.....

..... "

..... ž.....

ž.....

..... ".....

..... ž.....

..... ".....

..... ž.....

..... ".....

..... !..... !.....

· C978 : Ua]mXUHVUgY · · · · · &+L · · · · · "· · · · ·

· ž · · · · · "· · · · · ž · · · · ž · · · ·

ž · · · · · "· · · · ·

ž · · · · · ž · · · ·

· · · · · "· · · · ·

\$ž

· · · · · ž · · · · "· · · · ·

· · · · · "· · · · ·

fl · · · · · L · · · · ž · · · ·

"· · · · · fl · · · · %0 1 L · · · · ·

· · · · · "· · · · ·

· · · · · ž · · · ·

· · · · · "· · · · ·

· · · · · ž · · · ·

&+L · · · · · ž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fl	L	"
			ž
			"
ž			"
"			"
"			
		ž	
"		ž	
	ž		
		"	
	ž		
		"	
			"
		"	
			ž
		"	
			"
		"	
		ž	
			"
		ž	
	"		

.
ž
"
ž ž
"
"

f&S% VE"

" "

f&S% UE"

" "

f&S%+E"

"

f&S%(E"

"

f&S% E" &S%

f&S% E" "

" " "

f&S%+E"

"

f&S% E"

" () f&E" %(!%+- "

f&S%*E"

"

f&S%(E" " %f&E" %' !%+%"

f&S%+E"

"

f&S%*E" " \$f&E" %' ' "

f&S%(E" "

"

f&SS+E"

" "

f&S%*E"

"

f&S%*E" "? [F]"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

fRS% E'
"
fRS% E'
fl E'
fRS% E'
"
fRS%&E'
fRS- E' &SS, S' #
fRS% E'
fRS%( E'
"
fRS%( E'
%+!% , "
fRS% E'
"
fRS% E'
fRS%( E'
"
fRS%+E'
"- (fl E' ' +! +, "
fRS% E'
fRS%&E'
fRS% E'
fRS%&E' ž
"
fRS%&E'
"
fRS% E'
!
"
fRS%( E'
"
" % ( fl E' ' % ) +"
```


%&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f&S%#E' " "
, f&E' %' !% ' "
f&S% E' " "
f&S% E' " " f&E' %' !% ' "
f&S%&E' " "

6i a `Yi U" f&S% E' % (h ` b h f b U h c b U ` Fy j Yk ` cZ @Yj Y Dc ` WYg UbX FYUHX
FYgyUFW ` &S% "

9i f c g h U z 9i f c d Y u b ` G c V U ` G U h g h W z ` G c V U ` d f c h W m c b . ` 5i g f j U ! G W Y a Y % z
: U a] m 6i f X Y b g 9 e i U] n U h c b : i b X z \ h d . # M F W U Y i f c d U Y i # f W X g j # Y g d f c g #
] b z # X U H # Y g d f c g S d i ` V S X U H # e i U] h U j Y # e V U g Y # U g f j U S g W Y a Y % "\ h a ` z
f l ` &S% "%S" \$'E

9g W V X c z 5 " f % - - E ' 8 c] b [` W c g g b U h c b U ` k c f _ ` c b ` d U Y b h U ` Y U j Y z A c g g z D ' z
/ ` 8 Y j Y b z : " f D X g ' E ' D U F Y b h U ` @ Y j Y . ` D f c [f Y g g C f ` D] h U ` 3 ` F Y g Y U F W ` U b X
D c ` W h = e g Y g] b ` 9 i f c d Y f l c " ") L ` % ' ! % & z B = 8 = # 7 6 ; G D i V] W h c b g "

A c g g " D " f & S % E ' D U F Y b h U ` Y U j Y U b X V Y n a b X ` g a Y f Y Z W m c b g ` c b ' ` \$ ` n Y U f g c Z
] b h f b U h c b U ` b Y k c f _] b [" F y j g h U 9 g d U c U X Y G c V e ` c [U ` & + f l E ' % ! &) "

C 9 7 8 : U a] m 8 U H M U g Y f & S % E ' C 9 7 8 ` W W ` U h c b g V U g Y X c b `] b z f a U h c b ` Z c a `
b U h c b U ` a] b] g f] Y g ` U b X ` g U h g h W ` c Z] W g ` A c g g z D " f & S % E ` b h f b U h c b U `
F y j Y k ` c Z @ Y j Y D c ` W Y g ` U b X ` F Y g Y U F W ` & S % " " 5 j U j U V Y U h ` \ h d . # k k k " "
` Y U j Y b Y k c f _ " c f [# d S u b X S f S f Y d c f l g # "

G k Y X] g ` G c V U ` b g f U b W 5 [Y b W m f g _ f] b [g U g g U b f & S % E ` G c V U ` b g f U b W] b `
:] i f Y g ` & S % "

0

2
" &S% "
. f&S%) "& "E' "
. f&S% "%%L
. f&S% "%& "L
. " &S% "

f&S% ", "& "L 3 X
. ž ž \hd.##k k k "a cY"[c"_f#bYk g#YbYk g#
Yl d`Ujb#YbYk gj Yk "Xc3Yk gSgYe1- %&& fl . ' &S%)" "% "L
. f&S% "%&"+L

0 2
. 86

. f k k k "Y"[c"_fL

. f l h d g ##k k k "\Yd"[j "U#DcflU"BcXY#\`dX#di V]WVbhyb# #GY]h"\$, \$*% "
\ha `YU? 6; L

. f l h d .##_c g l h [c"_fL

. f l h d .##k k k "Uk "[c"_fL

. ž ž \hd.##g l _c g l h [c"_f#g]h&#dcdS`YUfb]b[#YUfb]b[SSS' S%\$"
\ha `fl . ' &S%)" "' S'L

C978` ddd` . ž \hdg##g l h "cYk"cf[#]bXYl "Ugdll 38UHGYh7cXY1GB5SHUVY(ž
fl . ' &S%)" "' S'L

C978` : Ua]m8UHMgž \hdg##k k k "cYk"cf[#Yg#Zla]n#XUUMgY`ha ž fl
&S% ", "%&L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2019년 6월 19일 인쇄

2019년 6월 21일 발행

발행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1231

인쇄처 : 도서출판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2-1071800-000002-01